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17. 1.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목 차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I.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 1
- II. 추진 방향 ... 2
- III. 세부 운영기준 ... 3
 - 1. 학생 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 및 홍보 강화 ... 3
 -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4
 - 3.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6
 - 4.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 7
 - 5.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 9
 - 6. 학생 봉사활동 유의사항 ... 11
- IV.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협조사항 ... 12
- V.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관별 운영 일정 ... 13
 - <붙임1>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기준(예시) ... 14
 - <붙임2>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5개정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 18
 - <붙임3> 봉사활동 각종 서식 ... 19
 - <붙임4> 봉사활동 추진체계... 22
 - <붙임5> 자주하는 질문(Q&A) ... 24

I.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1. 추진 배경

- 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영역 다양화 내실화 추진
 - 학생 봉사활동의 다양화·내실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침 및 단위학교의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한 사례 제시 필요
-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영역 안정적 정착 추진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필요
- 다. 「자원봉사진흥 제2차 국가기본계획」(13~17, 행정자치부)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필요

2. 추진 근거

- 가.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0941호 및 제2015-74호)
-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안전행정부, 2013~2017)
- 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자치부, 2017)
- 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교육부, 2016~2020)

II. 추진 방향

목표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

실행

- ❖ 2009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운영(초3~고3)
- ❖ 2015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운영(초1~초2)

추진 방향

-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절차, 기본 인정 기준 및 내용별 인정(예시) 안내
-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협의체 협력 체제 구축 및 봉사 프로그램 발굴·보급

Ⅲ. 세부 운영기준

1 학생 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 및 홍보 강화

❖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

가.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 교육 실시

1)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학기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 수시로 교육 실시
-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소양교육(1~2시간, 학교에서 실시)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봉사활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외부기관 등 실시)은 봉사활동 실적 인정 불가

2) 학생의 진로와 흥미를 연계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학생의 적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 강조

※ 시간 확보를 위한 단순 봉사활동 및 일회성 봉사활동 지양

3)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

-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및 학급, 동아리, 가족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확대

4)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派性)(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나. 학생 · 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홍보 및 사전 확인 강화

1) 단위 학교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연수,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연중 수시 홍보

- ※ 학생·학부모·교사 연수시,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문, 홍보 등에 의한 봉사활동의 경우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 하도록 안내
 -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 인정 기관 및 시간, 원칙 등 적극 안내
 - ※ 학년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2)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근거한 인정 기관인지 **학교**에서 **사전 확인 강화**
- 특히 활동비를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사전 확인 철저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2017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한 인정 기준 준수

가.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기관 및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2)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3)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 및 평가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 및 지도 활동 등)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여부 확인

4)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3)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2) 영역별 지침 - (다) 봉사활동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2)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정대상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기관 이외의 기관 중 봉사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2)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3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가. 단위 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1) 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학교 자체 기준 및 운영 계획 마련하여 운영
 -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기재 관리 철저히 학생 봉사활동에 신뢰도 제고
- 2) 학교 자체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 마련하여 운영
 -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관과 연계 강화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양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 타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관련하여 협조 및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는 인정 가능 여부 검토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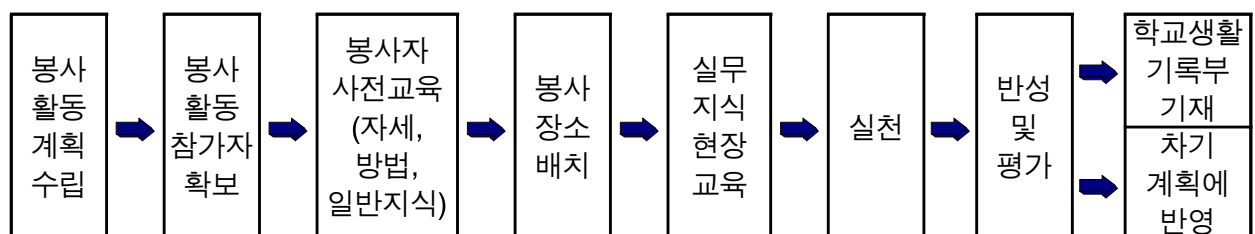
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

- 1) 구성: 교감(위원장),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장(부위원장), 위원(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등으로 구성하되 학교 실정에 맞도록 구성(5명 이상 구성 권장)
- 2) 역할: 학교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운영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3)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위반되는 봉사활동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

4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1)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교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 일상적인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하고, 학교별 실질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편성(학년도별 5시간 이내 편성 권장)
- 2)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영역별, 학년도별 10시간 이내로 부여하여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기회 확대 권장
 - 추진 절차



나.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현행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서)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2)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다. 학생 봉사활동 평가

- 1)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체크리스트,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2)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예시)

기 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나. 평가 - (1) 학생 평가 - (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5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

가. 구성원별 유형 : 개인, 동아리, 융합형

1) 개인형: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초, 중, 고 권장)

2) 동아리형: 진로나 흥미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 고등학교 권장)

※ 학기 초 자율동아리 활동 계획에 수립하여 진행할 경우 동아리 실적 인정시 봉사활동 실적 중복 인정 불가

3) 융합형: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장소, 내용, 대상 등을 결정하여 장기간 함께 실시하는 봉사활동(초등학교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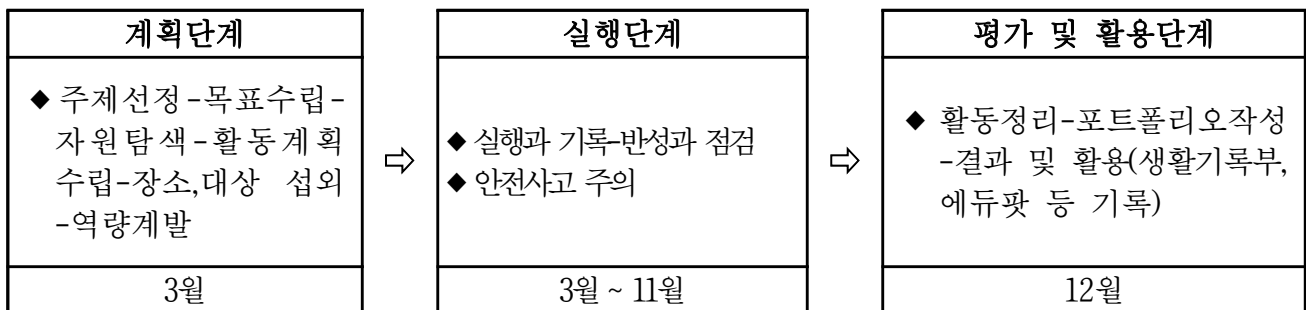
나. 기간 :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 활동 권장

※ 계획서 및 확인서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으로 한번만 제출 가능

다. 기관 및 장소 :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형 봉사기간 동안 동일기관 및 장소 또는 연계 기관에서 활동

라. 활동내용 : 학생의 진로 및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도록 실시

마. 절차



바. 평가

- 1) 연말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계획서, 실적 등을 참고하여 우수 사례 선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에듀모두),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공유
- 2) 학교 표창 규정에 따라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우수 학생 학교장 표창 권장

사. 기타사항

- 1)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추진 시 인정기준, 가능기관, 절차 등 모든 사항은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준하여 실시
- 2) 계획서는 학생이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붙임1>의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 서식을 참조하고 봉사활동 누가기록이나 확인서 등은 기존의 양식 활용

- 3)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에듀모두)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길잡이'참고하여 활용

6

학생 봉사활동 유의사항

- 가. 학생 봉사활동의 근거는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이며, 타기관 등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 안내 요청시 충분히 검토한 후 안내
- 나.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학년초 교사 연수시 자세히 안내 하여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다.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은 학생,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 라.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시 담당교사가 반드시 입장 지도하여 봉사활동의 취지 및 안전에 유의
- 마.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서 승인시 기관, 내용, 영역, 안전 등에 유의하여 검토한 후 승인
- 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 사.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의 진로, 흥미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전 생애 봉사활동의 기반 마련

IV.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협조사항

1. 교육지원청

- 가. 지역내 봉사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시군 자원봉사센터 등) 구성하여 봉사활동 지원 및 민원사례 발생 사전 방지
- 나. 학교 봉사활동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3월중)하여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안내 철저
- 다. 관내 신설교가 봉사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추가 안내 철저
- 라.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하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에듀모두 등에 탑재하여 공유(관내 학교급별 1건 이상 탑재 및 홍보 권장)

2. 학교

- 가.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별 봉사활동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
- 나.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협의하여 최종 결정
- 다. 학년초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연수 및 안내 철저
- 라.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최소화하여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 마.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 하고 우수 학생 발굴 및 표창 권장
- 바. 계획서 승인 및 확인서 발급시 허위 및 편법적인 봉사활동으로 비교육적인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V.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관별 운영 일정

내용	일정	담당기관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2017. 01.	도교육청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알림	2017. 01. 31.	도교육청
학교별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2017. 02.	학교
교육지원청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2017. 03. 07.(화) 예정	도교육청
학교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2017. 3월 둘째주	교육지원청
학교별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연수 (학생, 교사, 학부모)	2017. 03.	학교
봉사활동 운영	2017. 03. 01. ~ 2018. 02. 28.	학교
평가 및 환류	2017. 1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붙임 1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기준(예시)

가. 활동 세부 내용별 권장 시간

【봉사활동 기관에서 활동영역 구분 입력 방법】

지역사회봉사활동(이웃돕기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구분하여 입력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웃돕기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 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베품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4시간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민주시민 사회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민원안내, 업무보조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조리	4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체육 보조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일손돕기 재능나눔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통·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교통 안전 활동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지도활동 재능나눔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위문공연 재능나눔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환경감시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헌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년 12시간 이내)	1시간	
헌혈	헌혈	4시간	
기 타	기타 구체적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나. 기타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사례

-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등은 봉사활동 불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행사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기부)**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캠페인 활동)**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인정
 - '선플달기' 작성 최대 12시간 봉사활동 인정
 -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헌혈)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전혈 5회 및 성분헌혈 24회 이내)**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적 불인정
- **(안전신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수용된 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 ※ '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 2017. 3. 1.~ 3. 31.
 - 타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사전교육-캠페인-신고-소감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추진)**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하는 학생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
 - 국제기구가 주관하고 국가 기관에서 단위학교에 요청하여 시행
 - 실제 평가(사전검사, 예비검사, 본검사 모두 포함) 수행 시간 인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 실천 강조, 자연환경 보존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삶의 가치 이해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편성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 가. 편성·운영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정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설) 구체적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교내 봉사활동	•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 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등 •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등 •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환경 보호활동	•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 활동		•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③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정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③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 친구돕기활동 -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 -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 환경정화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 -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인 적 사 항	학 교	
	학번 및 성명	
봉사기간	201 년 월 일 요일 ~ 201 년 월 일 요일 ()일간	
	봉사활동 시간 : 총 ()시간	
봉사기관		
봉사장소		
활동내용		
<p>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인)</p>		

봉사활동 확인서

1.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반 : 번호 :
 - 성 명 :
2. 봉사활동 기간 : 201 년 월 일 시 ~ 201 년 월 일(일간)
 봉사활동 시간 : 총 시간(00시 00분 ~ 00시 00분)
3. 봉사활동 장소 :
4. 봉사활동 영역 :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5. 봉사활동 내용 :
6. 확인 기관장 명 : 전화 :
7. 확인자 직책 : 성명 : (인)

봉사활동 기록표

활동 일시 및 시간	기간: 201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총 ()시간				
활동 장소(기관명)					
활동 내용					
활동 상황					
학년	반	번호	이름	참가 여부	특기사항
확 인 란			지도교사 성명 (인)		

학생 봉사활동 카드

학 교 : 학년 : 반 : 번호 :
 성 명 : 담임성명 : (인)

월/일	활동 장소 (전화번호)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활동 시간	확 인	
				확 인 기관명	확인자의 직위 성명 및 날인

봉사활동 실적 누가 기록부

학 교 : 학년 : 반 : 번호 :
 성 명 : 담임성명 : (인)

일자 또는 기간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시간	누계 시간
특 기 사 항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

프로젝트명 (영역)		
인적사항	학 교	
	학번, 성명 (동아리명)	
봉사기간	201 년 월 일 요일 ~ 201 년 월 일 요일 ()일간	
	봉사활동 시간 : 총 ()시간	
봉사기관		
봉사장소		
활동동기 및 활동목표 (진로 및 특기연계)		
활동내용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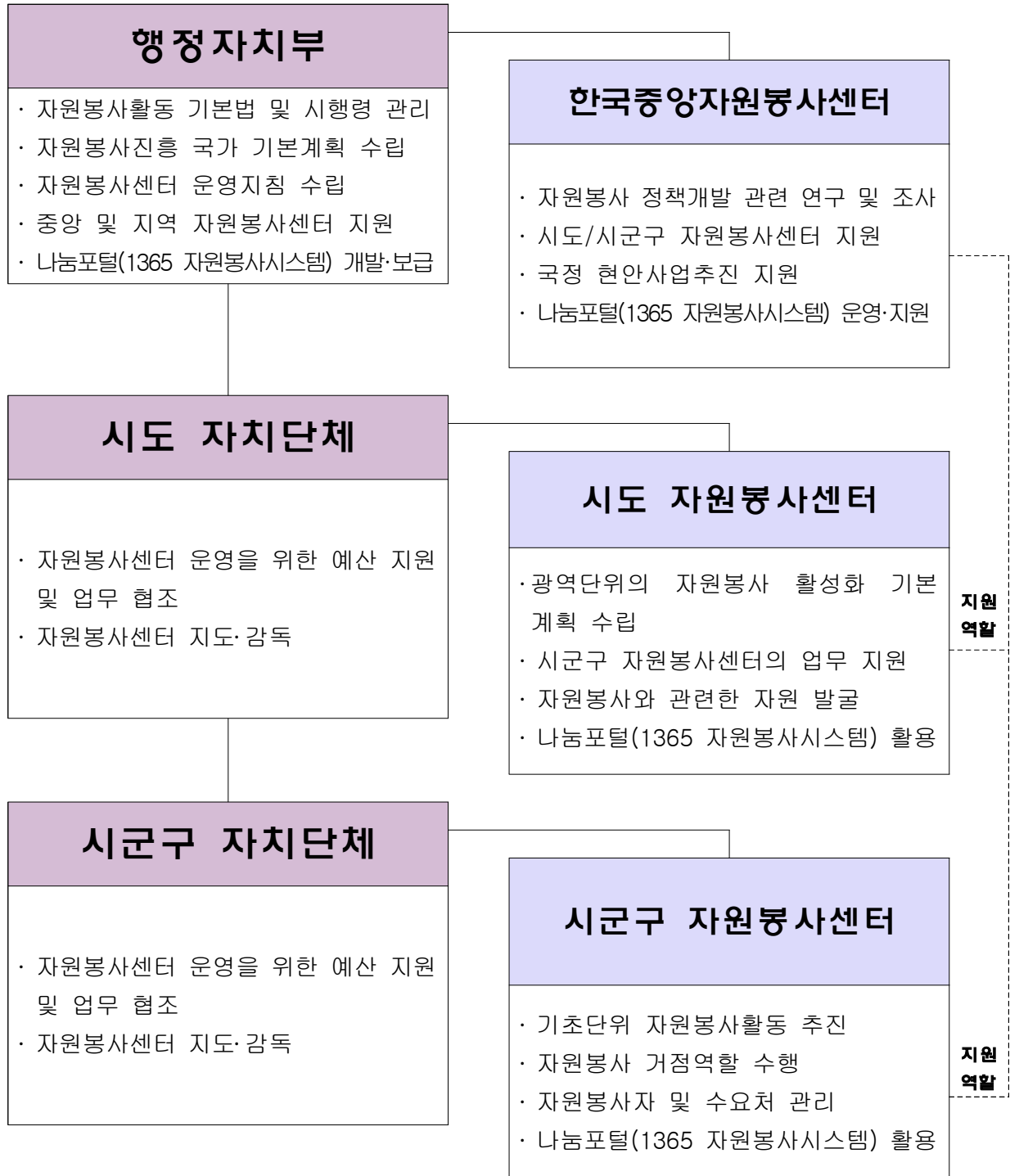
헌혈 학부모 동의서(승인서)

인적사항	학 교	
	학번 및 성명	
헌혈일시		
헌혈장소(기관)		
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승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학부모 성 명 : (인)		

붙임 4

봉사활동 추진체계

□ 중앙 -> 시도 -> 시·군·구 -> 1365 나눔포털 추진체계



□ VMS 추진체계



【문1】 사설기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 가능한가?

- 민간 기관이나 시설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 내용 및 영역 등이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지 않아야 함

【문2】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는가?

-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는 인정 가능함

【문3】 학생봉사활동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일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나?

- 학생봉사활동 추진 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을 경우에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을 벗어나 인정 할 수 없음

【문4】 교육기관에서 평일 행사에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가?

-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인정 가능 하며, 행사에 따른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만 인정

【문5】 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시간은?

-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라 4시간 인정

【문6】 헌혈 학부모 동의서 및 승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학생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동의서 또는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문7】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단, 같은 종류, 같은 기관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 가능)

【문8】 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사례는?

- ①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②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③ 문예작품(그림,글짓기) 공모전 응모 ④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⑤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⑥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례 등 봉사활동 인정 불가 ⑦ 인구조사 참여 ⑧ 학생 동원 행사

【문9】 해외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할 수 있는가?

-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불가

【문10】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위배되는 활동비를 요구하는 봉사활동 기관에서의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 허용한 경우 사전·사후 관리 철저히 할 것

【문11】 학교행사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된 학교행사에 봉사활동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함(창의적 체험활동 영역간 시수 중복 배정 불가)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가 있는 날은 행사 종료 후 일정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가급적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5시간 이내, 학년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한 학교 봉사활동의 영역별 10시간 이내로 편성 권장

【문 12】 학교급별로 학생 개인당 1년 간 봉사활동의 권장 시간은?

- 초등학교 연간 10시간 이상, 중·고등학교 연간 20시간(3년 간 60시간) 이상 권장함

【문 13】 학교에서의 일상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인정할 수 없음. 예를 들면 교실 청소 및 환경미화, 특별실 청소 등 학교에서 일상적인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단, 학교장이 학년초 봉사활동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학교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영역별 10시간 이내로 최소화하여 실시 권장

【문 14】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동아리활동 시간에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활동할 경우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인정할 수 없음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다만, 학년초 동아리 활동계획 이외의 별도 시간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문 15】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 활동을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선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생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 16】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기간에 한 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한가?

- 현장체험학습이나 학교장이 출석 인정한 경우는 학교 밖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수업시수 외 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함(예, 해당일 수업이 6교시면 2시간, 7교시면 1시간만 인정)

【문 17】 졸업식 이후에 실시한 3학년의 봉사활동과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1,2학년의 봉사활동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3학년의 졸업식 이후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1·2학년은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봉사활동이 인정됨(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
- 1·2학년 종업식 이후 봉사활동은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나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문 18】 봉사활동 확인서는 실무 담당자의 실인으로도 인정 가능한가?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학급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문 19】 봉사활동 확인서, 봉사활동 기록표, 학생 봉사활동 카드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봉사활동 확인서’는 학생이 개인별로 실시한 봉사활동실적을 해당 기관에서 기록하여 발급하도록 준비한 양식이며, 봉사활동 확인서 대신 ‘학생 봉사활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봉사활동 기록표’에는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실적과 학교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의 기록을 작성하고, 학생 개인별 확인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활동 집단별(학급별 또는 소그룹별)로 일괄 작성, 활용할 수 있음

【문 20】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할 때 학교장의 추천(허가)을 받아야 하는가?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사전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헌혈은 사전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학부모 사전 동의서 또는 사후 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실적 인정 됨
- 해외봉사활동은 학교계획이나 학교장 승인이 있다고 하여도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생활기록부나 에듀팟에 입력할 수 없음

【문 21】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중인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은 인정 가능(병원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준” 참고

【문 22】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한가?

- 실적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시 경기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실적연계사이트 이용시 사전에 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 실시